



**'97 종계 양허관세 추천물량 실수요
자별 배정**
461,000수, 17개 농장에 배정

본회는 농림부 축정 제 51532-714호 및 양계협 제 240호와 관련하여 '97 종계 시장접근물량 461,000수에 대한 실수요자별 배정을 농가의 추천신청량 및 전년도 수입실적을 기초로 표1과 같이 배정이 완료되어 농림부 및 해당농가에 통보하였다.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운영요령 통보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위생 51580-1338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월 10일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운영요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회는 각 지부, 분회에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운영요령을 통보하고 동 사업 실시단이 조기에 설

표1. '97 종계의 양허관세 추천물량 실수요자별 배정 집계표

| 농장명 | 대표자명 | '96 수입실적 | | | 배정량 | | |
|-------|------|----------|---------|---------|---------|---------|---------|
| | | G.P.S | P.S | 소계 | G.P.S | P.S | 소계 |
| 삼화농원 | 배성환 | 52,098 | | 52,098 | 52,098 | | 52,098 |
| 한일농원 | 차상협 | 42,550 | 136,640 | 179,190 | 42,550 | 61,174 | 103,724 |
| 중원농장 | 배신채 | 34,280 | | 34,280 | 34,280 | | 34,280 |
| (주)하림 | 김홍국 | 32,784 | 137,680 | 170,464 | 32,784 | | 32,784 |
| 신기농장 | 이상수 | 29,500 | | 29,500 | 29,500 | | 29,500 |
| 성진부화장 | 송인환 | 4,150 | 33,196 | 37,346 | 4,150 | 14,862 | 19,012 |
| 광천농장 | 김영한 | 6,084 | | 6,084 | 6,084 | | 6,084 |
| 복지농원 | 박수남 | | 44,800 | 44,800 | | 20,057 | 20,057 |
| 미원마니케 | 박준규 | | 123,220 | 123,220 | | 55,157 | 55,157 |
| 강남농장 | 한재권 | | 104,615 | 104,615 | | 46,836 | 46,836 |
| 채리부로 | 김인식 | | 7,840 | 7,840 | | 3,510 | 3,510 |
| 삼미부화장 | 양승덕 | | 58,420 | 58,420 | | 26,155 | 26,155 |
| 봉산농장 | 김진영 | | 38,940 | 38,940 | | 17,433 | 17,433 |
| 고창농원 | 정성희 | | 25,397 | 25,397 | | 11,370 | 11,370 |
| 죽전부화장 | 이순오 | | 6,700 | 6,700 | | 3,000 | 3,000 |
| 경남종축장 | 박명규 | | 5,040 | 5,040 | | | 0 |
| 상우축산 | 문관욱 | | 10,150 | 10,150 | | | 0 |
| 계 | | 201,446 | 732,618 | 934,064 | 201,446 | 259,554 | 461,000 |

치되어 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문을 통보하였다.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운영요령에서 사업단의 설치는 중앙사업단(축협중앙회), 시도사업단, 시군사업단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5인(축종별로 업종조합에 두는 경우 3인) 이상을 둘 수 있는데 각 사업단 내에 공동방역협의회(대한양계협회 외)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단은 대상농가 참여도, 사업단 개소수 참여율 등 사업성적에 따라 축산정책자금 차등지원된다. 공동방역단 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농림부 훈령 제 882호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996. 12. 31. 농림부 장관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업

협동조합등 축산업 관련 생산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공동방역사업 실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방역사의 활성화 도모하고 나아가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방역사업실시(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구성, 운영, 임무등에 관하여 가축전염예방법령, 축산법령 및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에 의한 농림부사업시행지침서(축산업 구조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단의 설치) 1. 사업은 중앙사업단, 시도사업단, 시군사업단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중앙사업단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둔다. 3. 시도사업단은 중앙회 시도지회(이하"도지회"라 한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축종별로 구분하여 양돈, 양계 등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조합"이라 한다)에 둘 수 있으며, 시도사업단을 둘 경우에는 축종별 사업단 업무총괄은 도지회장이 한다. 4. 시군 사업단은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한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사업단이 업종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양돈, 양계 등 생산자단체의 지부(이하 "시군지부"라 한다)에 축산별로 구분하여 둘 수 있으며, 이때의 축종별 사업단 업무총괄은 지역축협이 한다. 5. 시군사업단은 업종조합 또는 계열주체의 조직여건을 감안, 2개 시군이상을 통합하여 광역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시군사업단을 광역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단의 구성, 공동방역협의회 운영, 예방약품지원 등 업무의 조정은 관한 시도지사가 시도사업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등) ① 중앙사업단장은 중앙회 경제담당부회장이, 시도사업단장은 도지회장(업종조합에 사업단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장)이, 시군사업단장은 지역축협조합장(시도사업단을 업종조합에 두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지부장)이 각각 되며, 사업단별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중앙사업단원 : 중앙사업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

2. 시도사업단원 : 시도사업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5인 이상 (사업단을 축종별로 업종조합에 두는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3. 시군사업단원 : 시군사업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축종별로 각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사업단에는 업종조합, 회원농가, 계열사업 참여농가 및 공개업 수의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내에 업종조합회원농가 또는 계열사업

참여농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업 농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사업단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 임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내에 공동방역사업단 운영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동방역협의회장은 각 사업단장이 되고 사업단별 협의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되, 제4조의 사업단원과 겸임할 수 있다.

1. 중앙공동방역협의회

가. 대한양돈협회, 양돈산학연구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의 임원

나.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다. 수의과학연구소 병리진단과장, 바이러스과장, 계역과장

라.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장

마. 기타 대학교수, 전업농가 및 가축방역 전문가

2. 시도공동방역협의회

가. 대한양돈협회, 양돈산학연구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우협회, 대한수의사회 도지부(회)장

나. 시도 축산과장

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라. 종축장장

마. 축산, 수의대학 교수

바.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업체 대표

사. 계열화사업 대표자

아. 기타 가축방역전문가

3. 시군공동방역협의회(축종별 공통)

가. 시군 산업(축산)과장

나. 전업 양축농가 대표

다. 종돈장, 종계장, 계열사업 참여농가

라. 읍·면별 양축농가 대표

마. 공·개업 수의사

바.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업체 대표

④ 시도 및 시군의 공동방역협의회장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단이 실시하는 가축전염병별 예방주사 실시시기와 방법, 방역요원확보방법,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미실시 농조치, 방역기술희보방안등을 협의하고 예방주사 실시비용등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비용 징수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사업단의 업무등) ① 각사업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사업단

가. 공동방역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나. 기동 방역요원 및 방역차량 확보

다. 대양축농가 방역 홍보·교육 실시

라. 시군사업단 현장 기동방역 지원

마. 시도 사업단의 사업평가 및 농림부장관에게 사업평가결과 보고

바.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하는 예방약품, 소독약품 등의 지원

2. 시도 사업단

가. 중앙사업단의 공동방역 세부추진계획 시달

나. 시군사업단의 사업평가와 중앙사업단장 및 시도지사에게 사업평가결과 보고

3. 시군사업단

가.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공·개업 수의사의 지도하에 공동방역에 참여한 농가의 가축에 대한 탄저, 기증저, 돼지콜레라, 돼지오세스키, 뉴캐슬병 예방주사 실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나. 공수의 동원확인 및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수의 동원 확인서 통보

다. 전염병 발병 의심농가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에 병성감정의뢰

라. 전염병 예방주사 미실시, 검진기피,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규정위반(소홀) 농가를 적발하여 가축방역담당 행정기관에 통보

마. 살처분가축 보상 평가 참여

바.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방약품 및 소독약품 보관관리
 사. 방역관리 우수읍면 선정 및 시장, 군수에게 결과 통보
 ② 제1항제3호의 방역요원은 축산업에 경험이 있는자 또는 농업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축산과목(과)을 이수한 자로 구성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단의 업무협조)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는 제5조의
 사업단장이 실시하는 공동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1. 농림부장관
 - 가. 주요가축전염병 장·단기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계
 획 수립
 - 나. 예방약품 구입비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 라. 시도사업단의 사업평가 및 축산정책사업자금의 시도별 차
 등지원
 - 마. 전염병발생시 긴급방역 지원
2. 시·도지사
 - 가. 가축방역사업계획 시달
 - 나. 가축방역사업 지방비 예산확보
 - 다. 시군에 예방약 및 소독약 지원
 - 라. 시군사업단의 사업평가 및 농림부장관에게 평가결과 보고
 - 마. 축산정책사업자금의 시군별 차등지원
3. 시장·군수
 - 가. 시군사업단에 탄저, 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예방약품과 소독약품 지급
 - 나. 사업단의 예방주사 실시를 위한 지방비 확보
 - 다. 시군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공수의 책임지역 지정, 배치 및
 시군 사업단장의 공수의 동원실적에 의한 공수의수당 지급
 - 라. 시군사업단의 축종별 방역요원 활용 지원
 - 마. 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또는 도축장 출하 도태, 동거축 이
 동제한 및 출입통제 조치, 살처분보상금 신청 및 지급
 - 바. 전염병 발생농장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 사. 방역관리 우수 읍면(농가) 선정, 축산정책사업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및 방역관리 소홀농가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 조
 치 또는 지원 배제
 - 바. 관내 전염병 발생상황 파악 및 사업단 통보
4. 수의과학연구소장
 - 가. 중앙사업단의 가축방역기술 교육·홍보 협조
 - 나.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
 - 다. 주요전염병발생시 현지 역학조사실시
- 4 수의과학연구소장
 - 가. 중앙사업단의 가축방역기술 교육·홍보 협조
 - 나.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
 - 다. 주요 전염병발생시 현지 역학조사실시
5. 축산연구소장
 - 가. 축산시설, 환경 및 사양관리기술 교육·홍보
 - 나. 우수종축 분양 및 알선
6.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 가. 관내 양축농가 방역기술 교육·홍보 실시
 - 나. 우결핵, 부루세라병, 추백리 검진 실시
 - 다. 도축장, 도계장 출하가축을 위주로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 실시 및 그 결과를 시군사업단에 통보
 라. 각 사업단에서 의뢰된 가검물의 병성감정 실시
 마. 시군 사업단 방역요원 및 가축전염병예찰요원 기술 교육
 실시
 바. 관내 가축전염병발생 동향분석
 7. 대한수의사,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가. 가축방역 홍보·교육 협조
 나. 회원농가 등으로 하여금 공동방역사업 참여 독려 및 시군
 지부 사무실 사용 협조 등
 8. 수의과학대학, 동물약품업체, 사료업체 등 가축질병병성감
 정실시기관
 가. 각 사업단에서 의뢰된 가검물의 병성감정 실시
 나. 가축전염병 발생확인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다.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기술 교육 지원

제 7 조(사업단의 평가) ① 중앙사업단장과 시도사업단장은 매년
 2회이상 관할 사업단의 사업 추진 실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
 동방역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각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단의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방역사업 추진 실태를 점
 검. 평가한 시군사업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시도사업단장은 매
 년 9월말까지 그 결과를 각각 관할 시도사업단장과 중앙사업단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각각 관할 시도지사와 농림부
 장관에게도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관련사업 실무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평가반을 편성하여 현지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 평가결과 반영) ①농림부장관, 중앙사업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사업단의 사업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토
 대로 관할 시군,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사업단에 다음 각호의 정책
 자금을 차등지원하거나 지원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가축전염병 검진, 기생충구제등 가축
 방역재료비
 2. 기동방역진료차량, 살처분가축 소각로 시설, 전염병검사장
 비 구입비
 3. 국비 및 지방비 공수의 수당
 4. 축종별(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
 5. 축산경영자금
 6. 축협조합육성자금

제9조(차등지원 기준) 제7조의 사업단 평가결과 반영시 차등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후관리) ①시군 사업단장은 사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사업단 사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약품 수급, 방역요우
 너 관리 사업단 운영실적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
 관, 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중앙사업단장은 이 요령에 의한 정책자
 금의 차등지원 여부, 방역약품의 적정수급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
 여 불합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한다. ③ 사업단을 설치한 지역의 시장·군수는 사업단
 을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방역실시
 단 설치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 운영세부사항) 각 사업단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1997. 1. 10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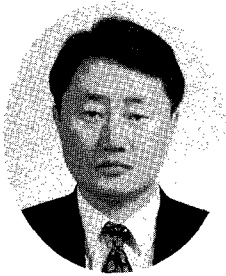
본회 조직개편 및 승진인사 단행



△강재명 부장



△전현수 차장



△조종수 차장

본회는 다변화되어가는 양계산업에 대처하고 본회 회원들에 대한 권익을 한차원 높인다는 취지아래 지난 1월 1일 부터 기존 총무부 및 홍보실을 지도관리부(총무과, 지도조사과, 개량지도과)로, 편집부를 홍보부(편집과, 해외협력과, 홍보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들은 종전 업무와 관련된 보직을 부여하였다. 직원 승진발령에서는 강재명 전 총무부 부장(3급)을 지도관리부 부장(2급)으로, 전현수 전 편집과장을 홍보부 차장으로, 조종수 전 경영지도과과장을 지도관리부 차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설 직후 난가하락 불가피

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연휴를 앞두고 상인들이 물량확보에 들어가 난가가 오르고는 있으나 설 이후 체화물량 증가로 인해 난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상인고시가 생산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난가 유통을 더욱 흐릴 것으로 보아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대한 방안으로 생산자들이 입지를 모아 직장기를 끊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계열농가 결제지연으로 어려움

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약)가 지난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아리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육계 산지가격이 생산비선 이상을 기록하자 입추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입추 자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지역에서는 IB, IBD 등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모성 질병(호흡기성 질병 등)이 어린 일령의 병아리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 겪었던 계열농가들의 경영압박이 최근 계열주체들의 결제지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축산기술연구소 이상진 박사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겨울철 보온과 환기 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음 월례회의 때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양축가를 위한 사양관리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병아리 감축 계속사업으로



1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해를 맞아 불황이 없는 한해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산란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중계입식이 무리없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봄병아리 생산이 늘어나 가격이 500원대 이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계의 경우 지난해 말 불황을 겪으면서 환우에 들어간 계군들이 3~4월경 부터 생산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 불황이 이어질 것을 암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아리 감축이나 소비, 홍보사업이 더욱 필요하리라 강조하고 계열업

체들과 합심을 하여 이 국면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업을 이끌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타사항으로 환우 방지를 위한 중계노계 창구의 일원화, 중계장 품질인증 실시 여부, 닭고기 잔류문제 대비건, 백세미에 대해 규제를 만들어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닭경제능력 검정의 경우 원종계 농장에서 선정하는 농가에서도 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최준구 회장 유임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 정기총회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96년 수입지출 결의서 검토, 감사보고에 이어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임기 2년), 회비 납부건, '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관심이 집중된 임원선출에서는 경륜과 지도력 면에서 인정을 받은 최준구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고문에는 심준식, 박승봉 씨가 선출되었고 부

회장에는 장대석, 이두형 사장이 신임부회장으로 합류한데 이어 감사에는 윤형수씨가 선출되었다. 한편 난가조절은 조절위원 변동없이 종전대로 실시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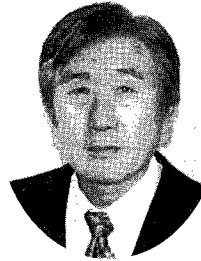
임원명단

회장 : 최준구

고문 : 심준식, 박승봉

부회장 : 구천석, 천강균, 장대석, 이두형

감사 : 김남옥, 윤형수



◁이계순 분회장

임원명단

분회장 : 이계순

부회장 : 최정필

총 무 : 홍명식

감 사 : 신원섭

**미국 양계산업 시찰단 파견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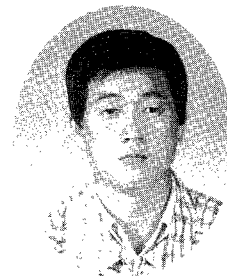
본회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견문을 넓히고, 특히 아틀란타양계박람회에 참관하여 '97 한국양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을 쌓고 양계산업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마련코자 직원 2명(강재명 부장, 황일수 대리)을 시찰단으로 파견하였다.

이번 시찰단은 8박 9일 일정으로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은 물론 타이슨사 방문, 타이슨 계열 도계장 방문, 미시시피 대학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양계산업과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회 천안연기분회

이계순 씨 신임분회장 선출

본회 천안연기분회가 지난 1월 1일 부로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송복근 분회장

임원명단

회 장 : 송복근

부회장 : 손배창, 김남익

총 무 : 박경서

고 문 : 이원기, 최영식

감 사 : 김형모, 장일광